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962

발의연월일: 2025. 3. 14.

발 의 자: 강대식 · 고동진 · 김선교

김미애 · 배준영 · 김장겸

강선영 • 주호영 • 김상훈

안철수 · 박덕흠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국방부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면서 협의기간은 20일 이내로 하되, 최대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협의기간 내 협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협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일의 협의기간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내용을 검토하는데 충분하지 않고, 국방부장관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더라도 협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협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함에 따라 군 의견이 미반영된 채로 협의가 끝날 수 있어 사업 진행 시 향후사업 중단 등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로 공공주택지구 지정은 평면적 개념으로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등 세부계획이 정해지지 않아 관할부대에서 구체적인 검토가 어

럽고, 이후 지구계획 승인 등 세부계획 단계에서는 협의 규정이 없어 국방부의 의견이 누락될 수 있으며, 공공주택사업이 상당히 진척이 된 후에 국방부가 국가안보상의 문제를 제기하여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 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공주택 지구 계획을 수립할 때 군 관련 제약 상황을 사전에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함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협의기간을 30일로 늘리고, 국방부장관과의 협의에 대해서는 협의가완료되지 않아도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하는 한편, 지구계획 및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 승인·변경 시 관계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규정을 신설하여 공공주택사업 추진 시 관계중앙행정기관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공공주택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제17조제2항 및 제40조의8제3항).

법률 제 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본문 중 "20일"을 "30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협의가"를 "협의(국방부장관과의 협의는 제외한다)가"로 한다.

제17조제2항 본문 중 "제33조에"를 "국방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제33조에"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40조의8제3항 중 "대통령령으로"를 "국방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지구의 지정 등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8 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택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공공주택지구계획 승인 등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에 관한 적용 례)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4조(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 승인 등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8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8조(주택지구의 지정 등을 위 | 제8조(주택지구의 지정 등을 위 |
| 한 관계기관 협의) ① (생 략) | 한 관계기관 협의) ① (현행과 |
| | 같음) |
| ② 제 1 항에 따른 협의기간은 2 | ② <u>3</u> |
| <u>0일</u> 이내로 하되, 관계 중앙행 | 0일 |
| 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시·도 | |
| 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 |
|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 |
|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 | |
| 여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 |
|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협의기 | |
| 간 내에 <u>협의가</u> 완료되지 아니 | 협의(국방부장관과의 협 |
| 한 경우에는 협의를 거친 것으 | <u> 의는 제외한다)가</u> |
| 로 본다. | |
| | |
| ③ ~ ⑤ (생 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
| 제17조(지구계획 승인 등) ① (생 | 제17조(지구계획 승인 등) ① (현 |
| 략) | 행과 같음)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 ② |
|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하려면 | |
| 제33조에 따른 공공주택통합심 | 국방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
| <u>의위원회</u> 의 심의를 거쳐야 한 | 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제33 |
| 다. 다만, 지구계획의 변경(제3 | <u>조에</u> 공공주택통합심의위 |

4조제3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검토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변경은 제외한다)이나 공공주택사업자가 요청한 경우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⑤ (생 략)

제40조의8(도심 공공주택 복합사 업계획의 승인 등) ①·② (생 략)

③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 경승인을 하려면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를 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 견을 들어야 한다.

④ ~ ⑦ (생 략)

| 원회(이하 이 조에서 "공공주 | |
|--------------------|--|
| 택통합심의위원회"라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 |
| 아니한다. | |
| ③ ~ ⑤ (현행과 같음) | |
| 제40조의8(도심 공공주택 복합사 | |
| 업계획의 승인 등) ①・② (현 | |
| 행과 같음) | |
| ③ | |
| | |
| 국방부 등 관계 | |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 |
| 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 |
| | |
| | |
| | |
| ④ ~ ⑦ (현행과 같음) | |